

2019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세부평가기준(변경사항)

1 경 위

- '18.10.23, 국토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함
※ '19. 1. 1.부터 시행 ('20년 평가시부터 적용)

2 주요 변경내용

- 하도급실적의 평가기준 비율 하향 ☞ 붙임1 참조
-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배점 축소 ☞ 붙임2 참조
- 하도급 낙찰률 평가항목 신설 ☞ 붙임3 참조
-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확대(2점→4점)하고 인정기준 강화 ☞ 붙임4 참조
- 전자하도급계약 관련 재무지원 인정기준 강화 ☞ 붙임5 참조
- 교육지원 인정범위에 건산법상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포함 ☞ 붙임6 참조
- 상호협력 표창 배점을 확대(2점→3점) ☞ 붙임7 참조
-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항목 신설 ☞ 붙임8 참조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 붙임9 참조
- 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3점)을 배점에서 가점으로 전환 ☞ 붙임10 참조

3 평가항목 배점 변경

평가항목		배점(현행)		배점(개정)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10점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5점)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20점	25점	평가비율 하향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소 계		58점	53점	57점	52점	
3. 협력업자 육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	40	42	42	배점축소 신 설 배점확대 기준강화 기준강화 윤리교육신설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0점	30점	32점	32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	-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8점)	(8점)	
	④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5점)	(5점)	
	⑤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최소1백만원이상 지원)	(5점)	(5점)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10점	5점	10점	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5점	5점	
4. 신인도		12점	22점	13점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2점)	(3점)	(3점)	배점확대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없으면 기본점수, 감점)		(10점)	(20점)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	-	(10점)	(10점)	신 설
5. 가점		+3점	+3점	+6점	+6점	
가. 전자적 대금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원		(3점)	(3점)	(3점)	(3점)	범위확대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배점→가점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붙임1 하도급실적 (평가기준 비율 하향)

산정 방법	대기업		중소기업	
	평 가 기 준	점수	평 가 기 준	점수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²⁾ 총기성실적 ¹⁾	45%이상	20	40%이상	25
	35%~45%미만	15	30%~40%미만	20
	25%~35%미만	10	20%~30%미만	15
	15%~25%미만	5	10%~20%미만	10
	15%미만	0	10%미만	0

1) '총기성실적'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건설공사 실적신고('19.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18.5월말 확정)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기성실적이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 포함되는 경우, 동일 금액을 총기성실적에도 추가하여 산정

2)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에 협력업자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기성실적이 발생한 분을 평가
 - 하도급 기성실적에 대한 당년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산정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경우, 하도급실적은 익년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금액까지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자사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인정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건의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하도급실적은 제외
 - 제외된 하도급 실적은 익년도에 원도급공사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익년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가능
- ※ 원도급 기성실적 없는 하자보수 하도급계약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당년도 신규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당년도 이전에 하도급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기성실적도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사의 “해당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거래기간을 1.1~12.31으로, 연간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것
 - ㉡ (공동도급의 하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 대표사, 구성원사 모두 제출
 - ㉢ (공동도급 “구성원사”로서의 하도급계약인 경우) 다음 중 **택일 제출**
 -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해당부분에 밑줄표시)
 -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 개별공사건별 하도급공사대장(Kiscon 통보) 출력물
-

붙임2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점수 축소)

구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	$\frac{\text{총 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2)} }{\text{총 신규 하도급건수}^{1)}$	70%이상	<u>10</u>
		50%~70%미만	<u>8</u>
		30%~50%미만	<u>6</u>
		10%~30%미만	<u>4</u>
		10%미만	<u>0</u>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총 대금 적정지급 하도급건수 ²⁾	120건이상	<u>10</u>
		80건~120건미만	<u>8</u>
		50건~80건미만	<u>6</u>
		30건~50건미만	<u>4</u>
		30건미만	<u>0</u>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 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2) ‘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 건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하도급건수

- 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의 확인 없이 해당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하도급건수’로 인정

※ 공공발주자는 하도급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건산법 제31조제2항)

☞ **하도급률이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16.10.12) >

-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 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 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A. 공공공사의 경우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서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B. 민간공사의 경우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서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 ㉡을 1set로 제출

붙임3 하도급 낙찰률 (평가항목 신설)

산정방법	평가기준 ³⁾	점수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²⁾ 도급금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 금액 총액 ¹⁾	90%이상	5
	86%이상~90%미만	4
	82%이상~86%미만	3
	82%미만	2

1) '도급금액 중 협력업자 하도급부분금액 총액'의 판단기준

- 당년도에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하도급부분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상의 하도급부분금액으로서, 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액 총액' 판단기준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계약액을 합산하여 산정
-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0'인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건도 포함

3) 평가기준

- 산정방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 낙찰률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단,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된 공사가 전체 신규 하도급계약 공사건수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점 부여
- *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항목에서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비율'에 따라 평가된 비율을 적용하여 판단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지급 보증서 등 계약사실 확인서류(Kiscon 건설공사대장의 경우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 ㉡ 하도급률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 ㉠, ㉡을 1set로 제출

붙임4 전자 하도급계약 (배점 확대, 인정기준 강화)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총 전자 하도급계약건수}^2)}{\text{총 신규 하도급건수}^1)}$	50%이상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20%이상~30%미만	1
	20%미만	0

1) '총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 협력업자의 신규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2) '총 전자하도급계약건수'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문서용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 하도급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계약 건에 대하여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하도급계약

- ▷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 원·하도급업체가 직접방문 없이 양사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건을 조회 및 출력 가능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서류)

☞ ㉠, ㉡을 1set로 제출

- ※ 나이스다큐 전자조달시스템(www.nicedacu.com)을 통한 전자 하도급계약의 경우 사실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붙임5 협력업자 재무지원 (인정기준 강화)

구 분	산정방법	평가기준	점수 ³⁾
가.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frac{\text{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2)}}{\text{총협력업자 업체수}^{1)}}$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합산	100개 이상	5
		70개 이상~100개 미만	4
		40개 이상~70개 미만	3
		20개 이상~40개 미만	2
		20개사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1개 업체가 다수의 공사업종별로 협력업자를 등록한 경우라도 업체수는 1개로 판단

2) ‘재정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1개 협력업자 업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정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 당년도 해당 협력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 지원시 인정 가능

☞ 재무지원 인정 유형 (변경)

- ① 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기자재 등)을 지급한 경우
- ②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한 경우
- ③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자사가 부담한 경우

- 하도급계약액 1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6만원
- 하도급계약액 3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12만원
- 하도급계약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만원
- 하도급계약액 1억원 이상 : 지원금액 50만원
-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120만원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협력업체수 인정

(예시) 협력업체 A사와 철콘 하도급계약액 2억, 토공 하도급계약액 0.6억으로 총 하도급계약액이 2.6억인 경우, 신청사가 인지세(15만원, 7만원) 중 15.4만원 이상 (22만원×70%)에 대해 자사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재무지원한 것으로 인정

-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액 4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12만원
 - 하도급계약액 5천만원 이상 : 지원금액 20만원
 - 하도급계약액 1억원 이상 : 지원금액 50만원
 - 하도급계약액 2억원 이상 : 지원금액 120만원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협력업체수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재무지원 유형	제출서류
업체당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도급 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사유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내용·날짜·금액이 명시되고 원·하도급사 날인한 원본 제출)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도급 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 KISCON 건설공사대장 (원도급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서류) ㉢ 자사의 인지세(70% 이상) 납부 확인서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고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 보증서 면제 사유서

붙임6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과정 및 기준 추가]

구 분	산정방법 ⁴⁾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²⁾ 총협력업자 업체수 ¹⁾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³⁾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	
		200인 이상	159인 이상	120인 이상		5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자사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다수의 공사업종을 등록한 하나의 협력업자인 경우 업체수는 1개로 판단

2)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위탁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체수 합산
- 한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여러명이 다수의 ‘위탁교육’ 과정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업체수는 1개로 인정

※ (사례1)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2회에 걸쳐 교육 지원한 경우,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사례2) 협력업체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직원 2인을 교육 지원하더라도 업체수는 1개에 해당

3)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위탁교육(㉠)을 지원한 임직원수 합산
※ (사례1) 협력업체인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2인에 대해 교육지원한 경우 2명에 해당
(사례2) 협력업체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1인을 여러번 교육지원한 경우 1명에 해당

4)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시 우대사항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2)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3)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 하여 합산 (현행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법정윤리교육(㉡)에 신청업체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전체 참여 인원수의 3배를 '2)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3)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 예시 1 >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개사이며, 상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10명인 경우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 \frac{24(= 20 \times 1.2\text{배}) + 36(= 10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100} = 60\% \Rightarrow 5\text{점}$$

< 예시 2 >

총협력업체 법인수 1000개사이며, 하반기에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50명인 경우에는

나.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20\text{명} + 180\text{명}(= 50\text{명} \times 1.2\text{배} \times 3\text{배}) = 200\text{명} \Rightarrow 5\text{점}$$

☞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

①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과정 (㉓, ㉔ 중 선택 가능)

구분	㉓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이하 '위탁교육')	㉔ <u>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u> (이하 '법정윤리교육')
교육 대상	협력업체 임원 또는 직원	<u>신청업체 자사 임직원 또는 협력사의 임원</u>
교육 기관 및 과정	<p>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이수한 경우만 인정 <p>* http://www.hrd.go.kr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건설” 직종에서 검색</p>	<p><u>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법정윤리교육</u> - <u>신규 건설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u>

② '교육실비 등 지원' (현행과 동일)

- 원도급업체가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
-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가 해당 협력업체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나,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함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교육참가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재직여부 확인)
- ㉡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적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
 - 온라인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교육비 납부내역, 참석자, 교육내용, 수료여부 등 확인 가능 서류)
- ㉣ 자사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로서 교육수료증을 통해 신청사의 교육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실 확인 가능 서류
(교육비 이체 통장사본 등)
- ㉤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 또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 서류

☞ ㉠,㉡,㉢,㉣,㉤을 1set로 제출

- ㉠,㉡,㉢을 같음하여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을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 법정윤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만 제출
-

붙임7 상호협력 관련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배점 확대)

평가항목 ¹⁾	점수 ²⁾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3
시·도지사 표창 1회	2

1) 평가항목에 대한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업체에 선정된 경우 인정
- 대표자 또는 업체에 대한 표창 수상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장소장 등 소속 임직원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외 기타 공공기관장,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표창 수상은 불인정

2) 점수 산정방법

-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도 최대 3점까지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표창장 등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붙임8 제재처분 감점 (처분 원인행위 추가)

구분	제재처분 ¹⁾ 원인행위	평가기준 (처분유형)	감점 ²⁾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갑질,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하도급 관련	- <u>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관련</u>	<u>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u>	-1/-2
	- <u>건산법 제25조제2항, 제29조~제38조 관련</u>		
	- <u>하도급법 관련</u>	과태료 1회	-2
	- <u>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의3 관련</u>	벌금 또는 고발 1회	-3
	- <u>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1호·제3호· 제5호·제6호,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관련</u>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1) ‘제재처분’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 (처분일 기준)
-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점수 산정방법

- 제재처분 원인 행위가 관련법령 및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평가기준에 따라 처분유형별 감점을 모두 누계하여 대기업은 10점, 중소기업은 20점에서 차감하여 잔여점수 부여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를 받은 경우, 부실시공, 부당내부거래, 갑질 관련은 1회당 **2점**, 그 외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공사 하도급 관련은 **1점 감점**
 - 제재처분 원인 행위가 건산법 제82조제2항제5호, 제83조제10호,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3항, 제19조, 공정거래법 제23조~제23조의3 관련인 경우 2점 감점
- 건산법 상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하도급계약 후 30일 이후 통보) 또는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 1점만 감점 (현행과 동일)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별도 추가 제출서류 없음 (국토부, 조달청 등을 통해 협회에서 직접 확인)

붙임9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지원 (적용대상 확대)

산정방법	평가기준 ⁵⁾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frac{\text{시스템을 통한 임금등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2)}{\text{전체 민간공사 현장수}^1)} \times \frac{\text{시스템을 통한 임금등 지급 개월수 평균값}^4)}{\text{시스템 활용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값}^3)}$	70%이상	+ 3.0	60%이상	+ 3.0
	60%~70%미만	+ 2.5	50%~60%미만	+ 2.5
	50%~60%미만	+ 2.0	40%~50%미만	+ 2.0
	40%~50%미만	+ 1.5	30%~40%미만	+ 1.5
	30%~40%미만	+ 1.0	20%~30%미만	+ 1.0
	20%~30%미만	+ 0.5	10%~20%미만	+ 0.5

1)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당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수를 누계하여 산정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직불 현장은 제외

☞ 민간공사의 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2) ‘시스템을 통한 임금 등 지급 민간공사 현장수’ 판단기준

- 1)의 민간공사 현장 중 원수급인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현장수 누계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 1개 원도급공사 현장에 대해 여러 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계약 건에 대해, 현장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 확인서로서 현장내 건설근로자수 확인

3) '시스템 활용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값' 판단기준

- 2)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공사개월 수'는 당년도 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제출한 자료의 계약 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 단, 계약일이 금년도 평가대상년도 기간(1.1.~12.31.)이전이면 1.1.부터, 준공연월이 금년도 평가대상년도 기간(1.1.~12.31.) 이후면 12.31.까지로 설정

4) '시스템을 통한 임금 등 지급 개월수 평균값' 판단기준

- 3)의 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등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수의 협력업자 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이 최초로 지급된 현장과 마지막으로 지급된 현장의 시작월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가능

5) 평가기준 적용방법 (현행과 동일)

-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백분율)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 실적비율 산정시 소수 첫째자리(미만절사)까지 산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인정요건

- ▷ 원수급인이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업자의 인출 제한기능을 갖출 것(에스크로계좌 등 활용)
 - 다만,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
- ▷ 원수급인이 지급할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청구 및 승인기능이 있어야 하며, 원수급인 및 협력업자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및 대금 지급을 알리는 기능을 갖출 것

※ 필요시 평가기관에서 운용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사실확인 서류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 종합건설업체명, 현장명, (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대상월, 월별 지급일자, 월별 지급건수 (근로자수, 자재·장비업체수 포함)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 (공동도급의 구성사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 한함)
 -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현장근로자수 확인용)
- ⇒ 현장별로 ㉠, ㉡, ㉢을 1set로 제출

붙임10 해외건설 동반진출 실적 (배점을 가점으로 전환)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점 ³⁾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건설공사 ¹⁾ 로서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 ²⁾	5건 이상	3건 이상	+3
	3~4건	2건	+2
	1~2건	1건	+1

1) ‘해외건설공사’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2018년도 협회(전문협회 포함)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건 중 당년도에 해외에서 기성실적이 발생한 공사

2) ‘협력업자와 동반진출한 건수’의 판단기준 (현행과 동일)

- 자사가 해외공사 진출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건수
- 하나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함
 -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수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 건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3) 가점 점수 산정방법

- 동반진출 건수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단, 총평가점수 100점을 한도로 가점 적용 가능

사실확인 서류

※ 별도 추가 제출서류 없음(‘해외건설협회’에 신고·확인된 실적을 통해 평가)